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233
----------	------

발의연월일 : 2017. 9. 11.

발의자 : 윤종필 · 조훈현 · 김규환

박덕흠 · 이종배 · 김성찬

나경원 · 원유철 · 임이자

신보라 · 김명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배포자 및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하여 청소년에 대한 판매와 출입 등을 금지하고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규정과는 달리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 금지 관련 규정에서는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판매방식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고 법률의 통일성 측면에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구체적인 확인의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통일성을 확

보하고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나이”를 “나이 및 본인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4항”을 “제3항에 따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의 확인방법, 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 대여 등의 금지) ① · ② (생 략)</p> <p>③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u>나이</u>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④ ~ ⑦ (생 략)</p> <p>⑧ <u>제4항</u>에 따른 표시의 문구, 크기와 제6항에 따른 청소년유 해표시의 종류와 시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p> <p>⑨ (생 략)</p>	<p>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 대여 등의 금지)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나이 및 본인 여부</u> -----.</p> <p>④ ~ ⑦ (현행과 같음)</p> <p>⑧ <u>제3항</u>에 따른 상대방의 <u>나</u> <u>이 및 본인 여부의 확인방법,</u> <u>제4항</u>----- ----- ----- -----.</p> <p>⑨ (현행과 같음)</p>